

# 충남대학교 대학원 농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개정 2015.3.1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농공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중 각각 세미나 과목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시험과목은 응시자가 수강한 과목 중 석사학위과정 2 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②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위원은 시험과목의 담당교수, 관리위원은 학과장, 보조 관리위원은 조교로 정한다.

③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에서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응시 가능하다.

④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3.12.)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6. 학과 자체 전공영어 시험 100점의 60점 이상

②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3.12.)

**제6조(논문 게재 발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직전학기에 논문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박사학위과정은 학진등재(후보)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등록된 특허도 논문과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4.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
- ②석사학위과정은 학술회의 Proceeding에 1편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 지도 위원회)** 본 학과의 박사과정은 논문 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5. 3. 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